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91
----------	-------

발의연월일 : 2025. 7. 28.

발 의 자 : 곽규택 · 강대식 · 박수영
김미애 · 이성권 · 조배숙
김소희 · 김대식 · 서지영
조승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빈집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가 신속하게 빈집 철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은 철거 명령을 내리기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 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현행법상 60일의 이행기간까지 추가로 소요되어, 실제로는 최소 8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철거가 가능해지는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이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도 지자체는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를 겪고 있으며, 행정대집행을 통한 빈집 철거의 경우에는 장기 소송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따라 빈집 철거 유예기간을 규정한 현행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유예기간 자체를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빈집 철거 및 정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7항 신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중 빈집의 철거는 제4조제4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빈집소유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때에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명령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경우(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빈집소유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통지된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빈집의 철거 등) ① ~ ⑥ (생 략) <u><신 설></u>	제11조(빈집의 철거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중 빈집의 철거는 제4조제4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빈집 소유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때에 명할 수 있다.</u>